Ⅱ. 캐나다

1. 예산현황 및 구조

가. 예산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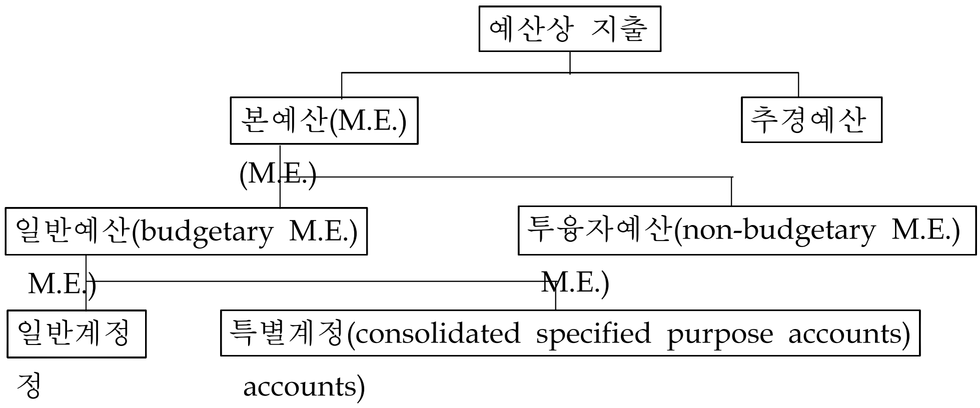

□ 일반예산(budgetary)과 투융자예산(non-budgetary)
- ○ 일반예산은 일반적인 정부의 사업지출과 특별계정으로 나눠
- ○ 투융자예산은 투자(investment)·융자(loan)·선급금(advances)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정부 금융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예산

□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 ○ 특별계정은 특정한 수입이 있는 계정으로서 해당 업무가 성격상 정부부서의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으로 정부의 세입과 세출임
- ○ 특별계정 중 가장 규모가 큰 실업보험계정(Employment Insurance Accounts)을 비롯한 보험계정이나 곡가안정화 기금 등 30여개의 기금이 이에 해당함

<표 Ⅱ-1> Consolidated Specified Purpose Accounts

Insurance Accounts	**Other Consolidated Specified Purpose Accounts**
1. Western Grain Stabilization Account 2. Crop Reinsurance Fund 3. Agricultural Commodities Stabilization Accounts 4. Investors' Indemnity Account 5. Health Insurance Supplementary Account 6. Employment Insurance Account 7. Nuclear Liability Reinsurance Account 8. Ship-Source Oil Pollution Fund **Endowment Principal** 9. Mackenzie King trust account 10. Endowments for Health Research 11. H.L. Holmes Fund 12. Queen's Fellowship fund	13. Trust Fund Account 14. New Parks and Historic Sites Accounts 15. Environmental Damages Fund 16. Canadian Commercial Bank and 17. Northland Bank Holdback Account 18. Supplementary Fines Fish Account 19. Environmental Studies Research Fund-Indian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20. Environmental Studies Research Fund-Natural Resources 21. Seized Property Proceeds Account 22. Fines for th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자료: Public Accounts of Canada 2003, Volume I

○ 일반계정은 우리나라의 일반회계, 특별계정과 투융자예산은 우리나라의 특별회계로 볼 수 있음

□ 2004~2005 Main Estimates

(단위: 백만$)

	Budgetary			Non-budgetary	total
	voted	statutory	total	(loans, investments, advances)	
Total Departments and Agencies	64,987	101,856	166,842	2,765	169,607
Consolidated specified purpose accounts	·	16,447	16,447	·	16,447
Total Main Estimates	64.987	118,303	183,290	2,765	186,055

자료: 2004~2005 Estimates, TBS

□ Consolidated Revenue Fund

○ 결산관(Receiver General)이 징수하는 모든 중앙정부의 수입이 들어감
○ 운영경비·투자(investment)·융자(loan)·선급금(advances)·만기채무 상환에 대한 지출은 매년 세출 법안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의회에 의하여 승인됨
○ 포함 범위
· department+agency+wholly-owned(or agent) crown corporation
(단 non-agent crown corporations, other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제외)

□ 일반정부 범위

○ Federal Government(연방정부), 온타리오 등 10개의 Provinces(주), 유콘 등 3개의 Territories(영지), Local Government(municipalities와 school boards를 구성)의 정통적인 정부부문과 캐나다 연금계획(CPP) 및 퀘벡 연금계획(QPP) 등 두 개의 연금부문으로 구성됨

□ National Accounts와 Public Accounts

○ Public Accounts는 예산상의 수입·지출 규모를 측정하고, National Accounts는 정부고용연금(government employee pension accounts)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까지 포함하므로 각각에서 도출된 재정수지의 규모는 상이함
○ 이들의 규모 비교는 Budget Plan과 Fiscal Reference Tables에 제시되고 있음

나. 예산의 규모

(단위: 백만$)

	2003		
	Budget	Actual	Difference
Income tax revenues	117,000	115,043	-1.957
Other taxes and duties	41,600	41,357	-243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18,300	17,870	-430
Other revenues	14,200	15,962	1,762
Total revenues	191,100	190,232	-868
Transfer payments	101,600	98,732	-2,868
Other program expenses	49,400	47,261	-2,139
Public debt charges	37,100	37,270	170
Total expenses	188,100	183,263	-4,837
Annual surplus	3,000	6,969	3,969

자료 : Public Accounts of Canada 2003, Volume I

2. 예산 관련 조직 및 법체계

가. 예산 관련 조직

□ 재무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 TBS)

○ 세출예산 편성 및 제안, 성과평가 담당
○ 정부지출 및 이와 관련된 행정적·인적 자원의 분배를 담당하며, 지출을 부서별로 분배·감독하고 부처와의 협상 수행
○ “Estimates" 의회에 제출
○ 총인원: 1,350명

[그림 Ⅱ-1] 재무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지출상한 등 재정정책의 틀 확립, 신규사업의 경제적 영향 분석
- ○ 세입부문 담당,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정부의 예산을 취합
- ○ “Budget" 의회에 제출, "Economic and Fiscal update" 보고서 발간
- ○ 총인원: 580명

[그림 Ⅱ-2] 재무부 조직도

나. 재정운영 법체계 및 재정제도

(1) 재정운영 법체계

□ 지출통제법(Spending Control Act, 1992~1996)

○ 1991~92회계연도부터 1995~96회계연도까지의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인 한도를 설정함
○ 재정이 안정화된 1995~96회계연도 예산 이후에는 동 법률이 종료되어 재정계획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게 됨
○ 정부지출의 증가율은 예상 물가상승률인 1.6% 증가율로 한정되었으며, 고용보험 등 특정 부문의 지출은 제외되었음

□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 연방정부 재정 관리, 결산 및 국영기업 통제에 관한 규정

(2) 재정제도의 변천

□ 정책·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PEMS)

○ 1979년에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PEMS를 도입
○ 중기재정계획의 도입으로 재무부에서 지출한도가 설정된 5개년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재무부의 영향력 증대
○ 정책과 예산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사업은 부서별이 아닌 다수의 부서가 포함된 정책분야별로(envelopes) 한도가 설정되었고, 내각에 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정부의 우선순위와 재원을 기준으로 개별사업을 심사함
○ 재원 중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정책예비비(policy reserve)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신규재원을 의미
○ 특정 부서의 지출감축은 여타 부서의 지출증가분이 되므로 부서의 장관은 지출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1989년 폐지됨

□ 지출관리 시스템(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EMS)

○ 정책 envelope를 폐지하고 하향식 통제를 부서별로 실시함으로써 부서의 무분별한 예산요구를 억제함

○ 성과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매년 제출되는 예산안에는 사업별·부서별 세부지출계획뿐만 아니라 예상 성과 및 지난 연도의 성과에 대한 정보도 포함함

○ 1995년에 도입된 EMS는 재정적자를 목표한 수준으로 축소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정 및 지출계획을 통하여 지출이나 사업의 변화를 실행 이전에 알 수 있도록 함

○ 지출삭감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프로그램 연구를 통한 여유재원 중 일부분을 전용하는 식의 재 배분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짐

3. 예산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제출서류
6월 말	· 의회의 여름 휴회 직후 1차 Cabinet Retreat · 소관 상임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출한 RPP를 검토하고 6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	
9월 말	· 2차 Cabinet Retreat · 하원 재정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는 예산정책에 대한 청문회(public hearing) 개시	
10월 중순	· 재무부 장관은 재정위원회에 정부의 광범위한 예산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 "Economic and Fiscal update" 보고서 발간	Economic and Fiscal update
10월 말/11월 초	· 재무위원회 사무국 위원장 "Department performance Reports" 의회 제출	DPR
11월 말	재정위원회 예산정책에 관한 청문회 종료	
12월 초	재정위원회 정부의 예산 제안의 근거를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사전협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12월 중순	하원은 예산정책에 관하여 토의. 표결은 없음	
1월 말	내각 예산전략 검토	
2월 초	수상 및 재무장관 예산안 최종 결정	
2월 말	· 재무부 장관 "Budget" 의회 제출 · 재무위원회 사무국 위원장 "Main Estimates" 의회 제출 · 각 상임위원회 "추산서" 심의 개시 · Winter Budget debate	Budget, Main Estimates
3월 말	· 재무위원회 사무국 위원장이 각 부처를 대신하여 각 부처가 작성한 "The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의회 제출 · 6월 말까지의 임시예산(interim supply) 승인	RPP
5월 말	· 상임위원회 "Estimates" 심사 보고서 제출	
6월	· 내각의 "Estimates" 심의 시작	
6월 말	· 의회 "Estimates" 승인	Supply Bill

* 회계연도: 4월~다음 해 3월

※ 예산 일정의 특징

□ 재정운영 순기: 4월~다음 해 3월
(의회 사전 협의 과정: 9월 말~12월 중순, 예산승인 과정: 2월 말~6월 말)

○ 정부 지출의 70% 이상이 예산편성 과정을 통한 연간 자금계획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질상 법정되어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매년 의회로부터 적절성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음

· 이러한 지출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 첫째, 이자 지급 및 기타 공공부채의 지급
· 둘째,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 프로그램 지원
· 셋째, 입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지출권한이 부여된 entitlement 프로그램

○ 따라서 의회 위원들은 본예산의 논의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며, 회계연도의 1/4이 지난 다음에야(일반적으로 6월경) 비로소 의회가 정부의 본예산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4. 예산편성 방식

가. 총액 결정 논리

□ 연방재정 목표

-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균형/흑자 재정수지(balanced budget or better)를 목표로 함. 즉 예산수입에서 프로그램 지출과 부채 이자를 차감한 기초수지는 흑자운용기조를 유지하고, 이에 prudence allowance와 contingency reserve를 차감한 예산수지는 균형 재정수지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단 만약 prudence allowance와 contingency reserve의 사용이 없을 경우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 ○ 연방정부는 향후 국가채무 수준을 전망하고 예산(budget plan)에서 설명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반면, 대부분의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콜롬비아, 앨버타)는 법제화된 재정규칙(legislated fiscal rules)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도 및 재정목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제재방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균형예산입법임

□ 예산 계획(budget planning)[1)]

- ○ 1단계: 매년 가을 재무부는 약 20개 민간 경제전망연구소의 전망치를 수집하고 재무부와 economic advisory group(중앙은행, 4개 민간 경제전망연구소)이 모여서 5년간의 경제 전망치(economic assumptions) 합의

- ○ 2단계: 민간 경제전망연구소의 평균 경제전망치와 현재의 조세·재정 정책에 기반하여 National Accounts 기준의 상세한 재정전망(fiscal projections) 결정 → 민간 경제전망연구소와의 협의하에 Public Accounts기준의 재정 전망으로 전환하고 fall Economic and Fiscal Updates에 제시함

---

1) The Economic and Fiscal Updates *2003, 85~88*, The Budget Plan *2004, pp49~50*

○ 3단계(**균형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정단계**):

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가 설정됨.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됨

② 향후 2년간 균형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분의 경제민감도(extra degree of economic prudence)가 설정됨.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이나 우선순위 지출영역에의 지출 증대, 채무상환에 사용됨

③ Contingency Reserve는 매년 일반적으로 30억달러가 설정되며, economic prudence는 계획기간 5년 중 최초 1년에 10억달러가 배정되며 5년째 되는 해에는 40억달러가 배정됨

<표 Ⅱ-2> Summary Statement of Transactions

자료: The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03 November*

○ 장기전망의 불확실성과 각 정부부처에 가시적인 재정목표의 설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수입·프로그램 지출·정부부채 이자·재정적자·정부부채 등의 재정목표 변수들에 대하여 budget plan에는 향후 2년치의 예산전망만이 수록됨 <아래 표 참조>

<표 Ⅱ-3> Summary Statement of Transactions
(including March 2004 budget Measures)

자료: Budget Plan 2004

나. 지출통제 및 지출의 효율성 증대

□ 2002년 10월 경제·재정 보고 수정안에서 제시한 건전 정화의 새로운 모토는 ‘건전한 예산운영은 단지 적자를 피하고 채무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을 책임있게 운용하고 저비용이면서 효율적인 정부서비스를 제공함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이었음

□ 지출검토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Expenditure Review)

○ 2003년 12월 16일부터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장으로 하는 지출검토 내각위원회는 모든 프로그램과 지출을 근본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원 재배분과 효율성 증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지출검토 내각위원회는 다음의 항목을 통하여 현재 프로그램 지출수준을 평가함으로서 매년 절약분을 늘리고 4년 이내에 최소한 30억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됨.

2004년 가을 최초 보고서 수상에 제출

· public interest test - 정부의 업무는 공익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 role of government test - 정부 활동이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는가?
· federalism test - 연방정부의 역할이 적절한지,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는가?
· partnership test - 어떠한 정부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에 이전해야 하는가? 또는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 value for money test - 예산지출의 가치 여부
· efficiency test - 그 업무를 계속할 경우 어느 정도 효율성이 향상되는가?
· affordability test - 결과적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제약 하에서 그 업무를 할 재원의 여유가 있는가? 여유가 없다면 어느 업무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5. 예산 서류

예산 관련 제출서류	제출시기
가. the budget···	2월 말
(1) budget speech	
(2) budget in brief	
(3) budget plan(-the technical budget document)	
(4) budget themes	
(-accountability, communities, economy, health, learning)	
나. Economic and Fiscal Update····························	10월 중순
다. the Estimates	
(1) PART Ⅰ - The Government Expenditure Plan········	2월 말
(2) PART Ⅱ - The Main Estimates························	2월 말
(3) PART Ⅲ -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	3월 31일
(4) PART Ⅲ -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DPR)··	가을
라. Supplementary Estimates································	

※ 캐나다의 예산서는 정부지출의 세부내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서와 세입 및 전반적인 재정계획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문서로 크게 대별됨

※ 주요 담당기관
- 세입 및 재정정책 중심 문서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지출 중심 문서 : 재무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 TBS)

가. 재정(Budget) (총 404페이지)

□ 정부의 지출계획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계획까지도 설명하며, 정부재정의 종합적인 포지션과 앞으로의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보고함

□ 재무부 소관인 Budget은 국왕연설(Speech from the Throne)에서 개관된 정부의 전략적인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정부의 재정구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진술

□ 경제적인 환경과 결부시켜 전체적인 수입, 지출, 재정수지의 수준을 논의(당해연도+향후 2개년)하며, 차입전망 등에 대해서도 언급

□ 세입전망을 분석하며 세제개편 등 세법 변경 안에 대한 기술적 사항 상세히 설명

나. 경제·재정보고 수정안(Economic and Fiscal Update, 2004~05 to 2008~09) (총 105페이지)

□ 주요 정책목표와 방향(글 위주)

- 의회와의 사전협의 과정(The Pre-Budget Consultation Process)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재정계획 제시
- 국내외적인 경제·재정전망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이슈(재정여건 충격 요소)뿐만 아니라 중장기 정책목표에 따른 예산소요를 재정계획의 관점에서 제시

□ 주요 내용

- 예산의 기능별·경제적 분류
- 조세지출의 요약 표
-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를 포함하여 재정위험(fiscal risk)과 지속가능한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 예산서의 추정치와 세출법안 수치 간의 조정(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세출법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더 중요해진 사항)

□ 부록
- 거시전망, 재정수지, 세입 및 국가채무 등에 대하여 5개년 전망치 표로 제시

다. 예산(Estimates)

□ 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 부처별 정부지출의 세부내역 제시

□ P**ART I - The Government Expenditure Plan**(총 6페이지)

○ 지불 유형(Type of Payment)에 따른 본예산(Main Estimates)의 지출총액과 전년도 대비 변화에 관한 세부내역 제시

□ **PART Ⅱ - The Main Estimates**(총 360페이지)

○ 예산의 개요(총 80페이지)

·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각 지출항목(vote)과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지출이 허가된 법령에 의한 지출항목(statutory)으로 구분하여 본예산(Main Estimates)의 지출내역 설명

○ 27개 부서별 예산(총 280페이지)

· 각 부처·국영기업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설명이 있고, 사업의 개별 활동별로 지출내역을 상세히 설명

□ **PART Ⅲ -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RPP)** (각 부서별 약 60페이지)

○ 약 87개에 이르는 부처별 지출계획으로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해연도와 향후 2개년도의 총 3개년 간 각 부처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화시켜야만 지출목표와 정부의 우선순위를 만족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함

○ 주요 내용

· 정부의 우선순위와 부처의 현 상황 및 그 전망에 비추어 본 중요한 변화와 지침 및 목표

·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행동, 관련 비용 및 변경사항

· 프로그램의 결과와 관리전략의 평가를 위한 관련 목적(goals), 목표(targets) 및 성과 측도(performance measures), 중요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업무중심의 성과관련 정보

○ 재무위원회가 소관부처가 제출한 것을 취합

·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각 부처를 대신하여 각 부서가 RPP Preparation Guide (재무위원회 사무국이 제공하는 RPP 편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RPP를 의회에 제출함

· 3월 말에 제출되므로 RPP에 제시된지출 규모는 예산서에 계획된 지출규모와 일치함

· 각 부처의 세부적인 예산항목과 향후 2년간의 지출계획 및 사업계획을 담고 있으므로 개별 부서의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지출계획, 즉 중기재정계획의 형태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 부서의 인력, 주요 자본지출, 이전지출, 순사업비용을 포함

○ 캐나다에서는 국가 전체의 중기재정계획만이 아니라 각 부처도 소관분야의 중기 지출계획(RPP)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각 부처 장관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commit)을 하는 성격을 가져, 각 부처가 재정지출 증가요인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

□ **PART Ⅲ -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DPR)** (각 부처별 60페이지)

○ 전년도 회계연도의(2004~05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2003~04회계연도) 성과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성과 개요와 세부내용으로 이루어짐. 비용감축과 같은 성과 및 예기치 못한 효과에 대해 설명

라. 추경예산(Supplementary Estimates)

□ 예산(Estimates)이 별도 입법이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예산만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사후에 심의에 붙여지는 '추경예산'은 필요한 근거 조항이 입법되었을 때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자금조달을 의회에 요구하게 됨. 여기에는 우발적 사안에 대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본예산이 'PART Ⅲ -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의 합보다 적은데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은 회계연도 기간중 별도의 법규 제정이 예상되거나, 예비비로 남겨둔 지출 및 회계연도 중 의회나 재무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출로 지출계획에는 잡혀 있으나 본예산 제출 시점에서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이러한 지출에 대한 승인을 위해 회계연도 중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됨

□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지출계획의 조정에 대한 의회승인을 얻기 위해 가을과 봄에 추경예산을 작성함

6. 결산 서류

□ 결산 심사는 의회 소속의 감사원(Office of Auditor General: OAG)에서 수행.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캐나다 감사원은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정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인 결산보고서(Public Accounts of Canada)를 매 회계연도 말에 의회에 제출함

□ 감사원은 의회 소속의 기구로서 1977년에 성과분석(value for money)의 회계감사 기능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었음. 성과분석의 비중은 Audit General 전체 활동의 60%에 이름

가. ‘Public Accounts of Canada’ 작성 근거법률

□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64조에 근거하여 "Receiver General(결산관)"에 의해 매년 가을에 의회에 제출됨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PART VI PUBLIC ACCOUNTS section 64**
【Submission of Public Accounts to Parliament】
64. (1) A report, called the Public Accounts, shall be prepared by the Receiver General for each fiscal year and shall be laid before the House of Commons by the 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 on or before December 31 next following the end of that fiscal year or, if the House of Commons is not then sitting, on any of the first fifteen days next thereafter that the House of Commons is sitting.
【Contents of Public Accounts】
64. (2) The Public Accounts shall be in such form as the 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 and the Minister may direct, and shall include (a) a statement of (i) the financial transactions of the fiscal year, (ii) the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Canada for the fiscal year, and

(iii) such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Canada as, in the opinion of the 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 and the Minister, are required to show the financial position of Canada as at the termination of the fiscal year;

(b) the contingent liabilities of Canada;

(c) the opinion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as required under section 6 of the Auditor General Act; and

(d) such other accounts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iscal year as are deemed necessary by the 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 and the Minister to present fairly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financial position of Canada or as are required by this Act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to be shown in the Public Accounts.

R.S., 1985, c. F-11, s. 64; 1999, c. 31, s. 112(F).

나. 주요 내용

□ 해당연도 동안의 재정거래와 이전연도에 승인되었던 법에 근거한 거래를 허용하는 의회 권한을 내용으로 함

□ 각 부처와 청은 "Receiver General“의 ”control accounts"에 그들의 회계를 조정할 책임을 지며, 각 부처와 청이 행한 거래 중 "Receiver General“에 의하여 관리되는 정부재정 거래의 중심되는 거래를 내용으로 함

다. ‘Public Accounts of Canada’ 구조

□ 2개의 volume으로 나누어지는데, Volume I에서는 정부재정 거래의 요약 분석이 이루어지며, Volume II는 2파트(part)로 세분화해서 Part I에서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Part II에서는 부처(ministry)별로 나누어 추가분석이 이루어짐

□ Part II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 financial statements of revolving funds (Section 1);

○ financial statements of departmental corporations(Section 2);

○ supplementary information required by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Section 3);

○ professional and special services (Section 4);

○ acquisition of land, buildings and works (Section 5);
○ acquisition of machinery and equipment (Section 6);
○ transfer payments (Section 7);
○ public debt charges (Section 8);
○ payments of claims against the Crown, ex gratia payments and Court awards (Section 9);
○ federal-provincial shared-cost programs (Section 10);
○ other Government-wide information (Section 11);
○ other miscellaneous information (Section 12).

라. 캐나다의 결산심사 과정 및 관련 기관

기관·일정	주요 활동
OAG	OAG는 정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인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말에 의회에 제출
결산상임위원회	OAG의 보고서를 결산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산상임위원회의 검토의견서
본회의	결산심사